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공개서 신고제 도입 등〉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92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정보공개서 신고제 도입	3
2. 광고·판촉행사 비용 분담 상한 규정	16
3.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22
4. 가맹본부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27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일영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4. 10.
- (3) 회 부 일 : 2025. 4.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요청권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의 경우 정부의 심사 인력 부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임. 그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과도하게 지우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나타나고 있음. 한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협의요청권과 관련하여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규제 및 법적 보호 수단을 강화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나.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조의6제1항 신설).

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14조의3제3항, 안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1. 정보공개서 신고제 도입

☐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고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공개서 신고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제7조, 제28조, 제33조, 제39조,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u>등록</u> 등)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u>신고</u>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u>등록</u> 하여야 한다.	① ----- ----- ----- ----- ----- ----- ----- <u>신고</u> ----- --.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u>등록</u> 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u>변경등록</u> 을 하여야 한다. <u>다만</u>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② ----- <u>신고</u> ----- ----- ----- ----- ----- ----- <u>변경신고</u> 를----- -----,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u>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u>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u>등록·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u>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u>구축·운용할 수 있다.</u> ⑥ 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u>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 ----- -<u>신고·변경신고한</u>----- -----. ----- ----- ----- -----. <삭 제> ⑤ -----<u>정보공개서의 신고·변경신고 및 공개를</u>----- -----<u>구축·운용한다.</u> ⑥ -----<u>신고, 변경신고</u>----- -----.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신설>	제6조의3(정보공개서의 승인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 -----제6조의2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된 정보공개서가----- -----승인을-----내용에 관한----- -----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가맹본부가 상당한 기간 내에 해당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야 한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	3. ----- -----신고----- --신고일----- ----- ----- ----- ----- -----

현행	개정안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등록</u>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u>등록</u>된 경우 2.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4. (생략)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u>등록</u>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 <u>등록</u>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u>공개</u>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u>등록</u> 또는 <u>변경등록</u>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 -----<u>승인</u>----- -----. 1. ----- -----<u>신고</u> 또는 <u>변경신고</u>----- 2. 제6조의3제2항----- ----- 3. 4. (현행과 같음) 5. -----<u>승인</u>----- ----- ② ----- -----<u>승인</u>----- -----<u>공개</u>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 ----- ----- ----- ----- -----<u>신고</u> 또는 <u>변경신고</u>----- ----- -----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가맹본부는 <u>등록된</u>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④ (생략)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략) 6. 정보공개서 <u>등록</u>의 대행 제33조(시정조치) ①·② (생략) <u><신설></u>	③ -----<u>신고</u>----- -----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신고·변경신고</u>----- ----- 제33조(시정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승인이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거부되거나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취소된 가맹본부에</u>

현행	개정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 2. (생략)	<u>대하여 정보공개서 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맹점사업자 모집의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u>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 ----- ----- -----.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 -----승인, 승인 거부-----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43조(과태료) ① 가맹본부가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u>제1호, 제1호의2</u>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과태료) ① ----- ----- ----- <u>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u> ----- ----- -----.
<신 설>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u>정보공개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u>
1. (생략)	<u>1의2.</u> (현행 제1호와 같음)
<u>1의2.</u> (생략)	<u>1의3.</u>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 ----- -----.
1. <u>제6조의2제2항</u>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u>내에</u>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u>변경등록을</u> 한 자	1. <u>제6조의2제3항</u> ----- ---- <u>내에</u> <u>변경신고</u> 를----- ----- <u>변경신고</u> <u>한</u> ----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⑦ ----- ----- -----.
1. <u>제6조의2제2항</u>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삭 제>

현행	개정안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¹⁾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제외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 임원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등을 수록한 문서³⁾로, 가맹사업거래에

- 1)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고 있음.
-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
- 2)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 ④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 ⑥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있어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⁴⁾ 2008년 도입되었고, 2021년에 모든 가맹본부로 확대 적용되었음⁵⁾.

□ 그런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등록 신청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이를 심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⁶⁾.

-
-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2)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 3)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5)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6) 「규제 강화에만 몰두?...정작 필요한 가맹정보는 뒷북」 (2024.10.14. 데일리안)

-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재무상황,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등의 정보를 연말 기준으로 갱신하여 매년 4월 말까지⁷⁾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면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최신의 정보공개서가 공개되는데, 2024년 기준으로 정보공개서 심사에는 평균 69.2일이 소요된 바 있음⁸⁾⁹⁾.

<연도별 정보공개서 처리 실적>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서울특별시	4,624	7,311	6,492	6,716	8,344
인천광역시	559	1,115	1,157	1,189	1,296
경기도	3,418	4,372	4,709	4,977	5,442
부산광역시	667*	952	1,189	1,202	1,27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779	4,018	4,331	4,676	4,825
합 계	12,047	17,768	17,878	18,760	21,182
평균 심사일수**	55.4일	64.3일	78.4일	86.8일	69.2일

* 부산시는 2020년 3월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처리

** 자료 보완을 요구하여 가맹본부가 자료보완요청에 응한 경우, 응한 날을 신청한 날로 계산하여 심사 기간 상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에 개정안은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가맹본부가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일정 기한 이내에 심사하여 승인하는 내용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최신 정보를

7)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

8)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심사가 완료되어 등록 및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2년 전 자료가 확인됨 (예를 들어 2024년 자료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2025년에 확인 가능한 최신자료는 2023년 말 기준 자료임).

9) 참고로, 정보공개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총 25명임(2025년 2월 기준).

- 서울특별시 11명(11명 중 9명은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전담, 2명은 분쟁조정 업무 겸임), 인천광역시 1명, 경기도 5명, 부산광역시 2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6명

적시에 제공하여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임.

<등록, 신고 비교>

구분	강학상 의의	특징
등록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청에 비치된 서류에 기재하여 그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실정법상 허가와 신고의 중간단계 정도인 완화된 허가제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음
신고	사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가 있으며, 후자는 사실상 완화된 허가제로 운영됨

자료: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323, 국회사무처

□ 다만, 개정안 제7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승인된 정보공개서가 아닌 신고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¹⁰⁾¹¹⁾, 정보공개서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행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실적은 총 248건인데, 정보제공과 관련한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10)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신고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경과하면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1) 현행법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여, 등록이 거부된 정보공개서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지 않음.

* 현행법의 등록 거부 사유: 가맹본부가 등록 신청한 내용 중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가맹사업의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 1년 이상 직접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경우(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시 해당)

<2024년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단위: 건)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정보공개서 갱신, 수정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금 반환	정보공개서 교부	불공정 행위	합 계
5 (2.0%)	34 (13.7%)	177 (71.3%)	16 (6.5%)	0 (-)	0 (-)	16 (6.5%)	248 (100%)

자료: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p.88) 재구성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후 심사체계 도입으로 정보 제공의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나, 전면적인 사무 심사체계 도입은 가맹희망자의 창업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작용 완화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광고·판촉행사 비용 분담 상한 규정

☐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6제1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신설>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분담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맹점사업자와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가 그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분담----- ----- ----- ----- ----- ----- ----- ----- <u>분담에</u> ----- -----

현행	개정안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u>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u>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내역 통보·열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u>제12조의6제1항</u>,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 -----. ----- -----<u>분담</u>----- ----- -----. ③ ----- <u>비용을 분담</u>----- ----- ----- ----- ----- -----. ④ 제2항----- -----<u>제3항</u>----- ----- ----- -----. 제33조(시정조치) ① ----- ----- ----- ----- ----- ----- -----<u>제12</u> <u>조의6제1항·제2항</u>, 제14조의2 <u>제5항</u>, 제14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u>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u>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	제35조(과징금) ① ----- ----- ----- ----- ----- ----- -----제12조 의6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5 항, 제14조의3제3항,----- ----- ----- ----- ----- ----- -----.

현행	개정안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43조(과태료)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7.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⑦ · ⑧ (생략)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2조의6제3항----- ----- ----- ----- ⑦ · ⑧ (현행과 같음)

□ 현행법령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형태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광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¹²⁾.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등) ②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

○ 이와 같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무분별한 광고·판촉행사 강요를 방지하고, 해당 비용 분담 비율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근 도입 (2022. 7. 5. 시행)되었음.

○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분담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¹³⁾¹⁴⁾

□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의 광고·판촉행사 비용 분담 비율의 상한(50%)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취지임.

○ 다만,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광고·판촉행사가 진행되는데, 개별 행사의 성격에 따라 비용 분담에 대한 의견이 당사자들마다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면, 당사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13) 「할인 부담에 쿠폰 수수료까지..‘속 터지는’ 가맹점주」 (MBC, 2023.10.16.)

「국감 지적에도 여전한 할리스...경찰 할인도 가맹점 부담 ‘100%」 (헤럴드경제, 2023.10.17.) 등

14) 참고로, 「2024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 비용 부담 광고 및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 비율은 각각 73.1%와 78.1%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사전동의 실시 비율에 대해 각각 96.9%와 100.0%로 응답하고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인식차가 큰 것으로 보임.

자간 상호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사안을 획일적으로 비율의 상한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판촉 행사 비용의 일방적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비용분담 상한 규정 시 대다수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원하는 광고·판촉행사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는 등 영업상 재량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3.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등록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가맹본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현행	개정안
	<u>령령으로 정한다.</u> ⑤ <u>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u>

□ 현행법 제14조의2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도 보장하고 있음.

○ 하지만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삼아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신고·수리 절차 등이 없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현행법 제14조의2 내용>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현행법 제1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르면, 복수의 사업자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를 판단할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특히, 현행법상 이와 같은 신고 및 공인절차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도 정확한 가맹점사업자단체 현황(단체 수, 가입 가맹점 사업자 수 등)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¹⁵⁾

□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15) 현재 공정위에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63개의 영업표지별 가맹점주 협의회의 연합단체일 뿐, 협의회의 각 회원사별 상세 현황이나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음.

공적으로 확인해주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경우, 등록제라는 공적절차를 통해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어 단체의 법적 지위 및 협상력 제고로 가맹본부와 사업자단체 사이의 협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사업자단체의 현황을 공정위 등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본부에 우선협상대상 단체 선정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난립 및 무분별한 등록을 막고,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적정 수준의 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등록 요건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허위등록·사정변경으로 인한 요건 미충족·자진 해산 등 등록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외에 시·도지사도 가맹사업자 단체 등록기관으로 정하는데, 이는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의 수월성·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수행을 위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며, 분쟁 조정에도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⁶⁾.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가 일관성 있는 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업무지침 등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에 등록 요건을 위임하고, 의무 등록제가 아닌 자율 등록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6)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회의 설치) ①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4. 가맹본부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규정(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4
조의3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요청 등) <삭 제> ②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로서 특정----- ----- ----- ----- ----- ----- ----- ----- ----- -----.

현행	개정안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u>성실하게</u>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생략) ⑤ <u>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u>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u>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u>	③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u>----- ----- -----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33조(시정조치) ① ----- ----- ----- ----- ----- -----<u>제12조의6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5항, 제14조의3제3항,</u>----- ----- -----

현행	개정안
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 ----- -----.
②·③(생략)	②·③(현행과 같음)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u>제12조의6제1항</u> ,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제35조(과징금) ① ----- ----- ----- ----- ----- ----- <u>제12조 의6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5 항, 제14조의3제3항,</u> ----- ----- ----- ----- -----. ----- ----- ----- ----- -----

현행	개정안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4조의2¹⁷⁾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가맹본부가 무응답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가맹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 주요 협의내용은 주로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① 가맹점 운영정책 협의·점포지원 프로그램 등(28.6%), ② 신메뉴·신제품 출시 및 상품

17)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리뉴얼(19.3%), ③ 메뉴가격 인상 논의 및 판매가 조정 협의(16.1%), ④ 가맹점 영업이익 개선방안·매출상승 계획(15.6%) 등임.

이러한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당수는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보임에도 협의를 위한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안 제14조의2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시정조치 및 과징금)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경우, 현행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등록된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빈번히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 간 의견 충돌로 효율적인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맹본부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의 요청에 대해서만 협의 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을 내실화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가맹본부의 과도한 협의 의무, 가맹점주 단체간 갈등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장치 등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